

협치자문관 근무일지: 2019년 6월

- 일일 5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공제함(점심시간 고려)
- 수당 지급 근무시간은 월 최대 15일(120시간)까지 인정하며,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함.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초과시간은 인정하지 않음
- 외출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

날짜	근무시간								실근무시간		수당 인정시간	
	전자				수기							
	시작시간		종료시간		시작시간		종료시간		시간	분	시간	분
	시	분	시	분	시	분	시	분				
2019/06/03	10	01	15	08					05	07	04	07
2019/06/05	13	32	17	20					03	48	03	48
2019/06/13	08	11	12	19					04	08	04	08
2019/06/20	12	46	17	27					04	41	04	41
합계									16	104	15	157 104
합계(시간)									17시간		16시간	

수당일수: 2일

협치자문관	주무관	팀장	과장
<i>김병우</i>	<i>김병우</i>	<i>김병우</i>	<i>김명주</i>